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4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홍기원·김승원·문정복

강선우 · 김민철 · 한준호

전용기ㆍ허 영ㆍ최종윤

홍정민 · 김회재 · 박성준

서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	
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u>취소하여야 한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